

회계변경에 대한 업데이트의 통보

통지서 제133/2016/TT-BTC호는 중소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안내

2016년5월26일에 재정부 부장은 통지 제133/2016/TT-BTC “통지133”호를 발급해서 중소기업의 회계제도를 안내한다.



Table of contents

공동 원칙	3
결정문서48호와 통지138호에 비한 통지133호의 장점	3
회계상 화폐의 단위	3
재정보고를 VND으로 바꿈	3
회계원칙과 계정확인의 조정	3
예속결재의 자격없는조직(예속결재단위라고 함)들에 회계결재조직진행	4
회계 계정항목	4
영업협력 계약서의 거래상 회계보충	7
증빙과 회계장부에 대한 필수성의 전부 폐기	7
재정보고에 관한	7
회계와 세무사이의 차별화	7
손해 총당금을 만든 필요 자산항목들의 보충	8

1. 적용 대상

통지133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의 규정에 다른 모든 분야 및 경제성분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단, 국영기업, 국가가 50%법정자금소유의 기업, 주식에 대한 법규에 다른 대중기업, 합작사법규에 다른 각 연합합작사 및 합작사등을 제외한다.

2. 공동 원칙

중소기업은 기업의 회계제도를 재정부의 2015/12/22일에 통지 제 200/2014/TT-BTC호 (통지200) 및 변경, 보충문서들을 적용할수 있지만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서에 통보해야 주고 1년내내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통지 제133호의 중소기업 회계 제도를 돌아 적용하려는 경우에 재정년도 초기부터 하고 세무서에 통보해줘야 한다.

3. 48호결정과 138호통지에 비한 통지 제133호의 장점

48호결정과 138호통지에 비한 통지 제133호의 최우 장점들은 다음.

- . 기업실제에 적용된 가능성의 제고: 통지 제133호의 회계제도 적용은 오픈, 영동성을 가지고 기업한테 여러 선택을 가져준다.
- . 기업의 관리, 운영의 서비스 요구에 향한다.
- . 형식 및 거래 이름에 비해 본질을 신중히 평가한다.
- . 국제의 통예와 기준을 더 가까이 접근한다.

4. 48호결정과 138호통지에 비한 통지 제133호의 보충 및 차이점

4.1 회계상 화폐 단위

통지 제133호는 중소기업들이 외화로 주로의 수, 지 회계단위가 있어서 다음 규정기준들을 만족하면 한 종류의 외화를 택해서 화폐단위로 할수있다고 허락한다.

회계상 한종의 화폐단위를 선택할때, 기업은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에 통보해줘야 하고

48결정과 138통지중에 반영된 화폐단위를 정하는 각 요소외에 다음 요소들도 검토되고 자기 기업에 사용된 회계중 화폐단위에 대한 증거들을 공급해준다:

. 재정 원동력을 동원하는 사용중의 화폐단위 (예, 주식, 증권 고시);

. 영업활동상 수금과 저축된 금액의 늘 수금한 화폐단위.

4.2 재정보고를 VND으로 바뀐

기업은 VND이 아닌 다른 화폐를 회계상 사용하면 공중에 발표하고 베트남 관할 기관들에 제출 해준 법적 재정보고서가 VND으로 표현된 재정보고서이다.

기업은 재정보고서를 필수적으로 감사된 대상에 속하면 공중에 고시하고 국가 기관에 제출해준 재정보고가 꼭 감사를 받아야 된다.

VND으로 재정보고를 바꿀때 기업은 재정보고서상에 베트남동으로 바꿔서 재정 보고에 줄수있는 (있으면) 영향들을 설명해야 한다.

4.3 회계원칙과 계정확인의 조정

48결정과 138통지에 비하면 통지제 133호는 오직 회계원칙만 규정하고 계정확인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다. 기업은 스스로 장부상에 계정 조정을 진행해서 증빙순환 규정과 적합하면 된다.

4.4 연속결재의 자격없는조직(연속결재단위 라고 함)들에 회계결재 조직진행

통지 제 133호는 각 기업들이 회계구조 조직과 연속된 단위에 분급적 결재를 진행 해서 자기 활동과 관리요구에 적합하고 법규와 어긋나지않으면 된다. 통지 제133 호는 기존 문서에 비해 능동성이 있어 기업이 개별회계 조직있는 연속결재 단위에 회계업무 결정을 향수있다. 즉:

기업이 연속결재단위에 지급해준 영업자금항목을 미수금으로혹은 소유주자금 으로 기록하기를 허용된다.

기업은 매 연속결재단위 에 구,판매거래; 상품,물건 유통; 내부 서비스 등에 대한 회계증빙의 형식(영수증 혹은 내부 유통증빙)에 매출금및 상품원가를 기록하기로 허용한다.

연속결재단위의 회계분급: 회계모형이 집중이나 분산에 따라 기업은 연속결재 단위한테 분배되지않는 이익까지 혹은 매출, 비용까지 반영하기를 받게된다.

4.5 회계 계정 (Account)

회계제도는 제1급 계정과 오직 일부2급계정까지 주로 규정되고 매계정이 한내용을 반영하고 장기, 단기계정들이 별도 없다. 각기업은 스스로 자세히 분류하고 장기, 단기를 검토하거나 자기요구에 따라 상세한 계정을 작성할수가 있다.



48결정서와 통지 제133호사이 회계 계정들의 비교 다음

통지 제 133 호	결정문서 48
첫숫자1의 계정	
없음	계정 1113,1123:은,금,회금속,보석
계정121 : 영업 증권	
-1211: 주식	계정121 : 단기 재정
-1212: 공채,신용표,기한표	
계정128: 결재날까지 가진 투자	
-1281: 기한 예금	없음
-1288: 기타 단기 투자	
계정136: 내부 미수금	
없음	없음
계정138: 기타 미수금	계정138: 기타 미수금
-1381: 처리 대기의 부족자산	-1381: 처리 대기의 부족자산
-1386: 저당금,보증금,선지급	
	-1388: 기타미수금
-1388: 기타미수금	
없음	계정142: 단기 선지급금
계정 151: 구입품의 납품중	없음
없음	계정 171: 정부의채권매매의 거래
첫숫자2의 계정	
없음	계정 221: 장기 재정투자 - 2212: 협력(jv)사업 불입금 - 2213: 연결거래기업에 투자된 금액 - 2218: 기타 장기 재정투자
계정 229: 자산손해의 총당금	계정 159: 각종 예비금 - 1591:단기재정투자의 감가예비금
-계정 2291:증권 영업상 감가손해의 예비금	- 1592:불량채권의 총당금
-계정 2292:기타조직에 투자하는손해의 예비금	-1593: 재고품의 감가총당금
	계정229: 장기재정투자의 감가 예비금
계정 2293: 불량채권의 예비금	
계정 2294:재고품의 감가 총당금	
계정 242: 선지급금	계정 242: 장기의 선지급금
없음	계정 244: 장기의 보증금,선지급금

48결정서와 통지 제133호사이 회계 계정들의 비교 다음

통지 제 133 호	결정문서 48
첫숫자3의 계정	
없음	331: 단기 차입금
없음	335: 결재기한된 장기의 부채
계정336: 내부의 채무	
계정 341: 차입금및 금융리스부채	341: 부채금, 장기차입금
	-3411: 장기 차입금
-3411: 각종 채용금	-3412: 장기 채무
	-3413:채권고시
-3412: 금융리스부채	+ 34131:채권액면가
	+ 34132: 채권 할인
계정 343:채권고시	+ 34133: 채권의 부가
-3431: 보통 채권	- 3414: 장기등록금,보증금의 수금
+34311: 채권의액면가	
+34312: 채권의 할인	
+34313:채권의 부가	
-3432: 교환 채권	
계정 344: 등록금기록,보증기록	
없음	351: 실업 지원의 예비자금
계정152: 부채의 예비금	
-3521: 상품보증용 예비금	
-3522: 건축항목용 보증 예비금	계정 352: 부채의 예비금(2급계정이 없음)
-3523:기업 재구조의 조정용 예비금	
-3524: 기타부채의 예비금	

4.6 협력 영업계약 거래의 회계 보충

토제제 133호는 협력영업계약 (BBC)에 대한 정의 및 BBC의 거래를 위한 기본회계를 제기한다.

4.7 증빙과 회계장부에 대한 필수성의 전부 폐기

통지 133호에는 기업이 스스로 자기활동특징과 요구에 적합된 회계증빙 양식을 설계되지만 주요내용 보장 및 회계법과 안내문서에 규정된 정보들을 공급해준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전에 규정으로 안내된 종류로 해야 할 증빙들이 꼭 한 필요가 없다.

비슷으로 모든 회계장부 양식 (각종 기본 장부, 일지등)들이 다 안내로 된다, (필수 적이 아니다.) 기업은 회계법과 관련문서들을 준수해야 하고 자기활동과 관리에 적합된 회계장부, 카트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지만 정보의 반영을 충분 하고 명백 하며 쉽게 검토, 검사 할 수 있게 한다.

4.8 재정정보에 관한 건

통지133의 73조는 기업이 결재가능의 점차 감소에 따라 하거나 전통적으로 장기, 단기로 구별된 재정정보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 외에 통지제133호도 기업이 연속적으로 활동되지 못한가정에 재정정보소의 작성 및 보고원칙에 대한 각 안내를 내준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자산과 채무를 장기 및 단기로 구분할 필요 없지만 결재가능의 점차 감소로 표현한 동시에 기업은 다시 전부 자산과 채무를 재평가해야 한다; 단, 제3측이 자산에 대한 권한 및 장부내 각종 채권의 의무를 계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4.9 회계와 세무사이의 차별화

48결정과 138통지에 비하면 통지제 133호는 회계와세무를 구분해서 기업의 관리와 운영요구에 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매출금과 비용에 대한 회계원칙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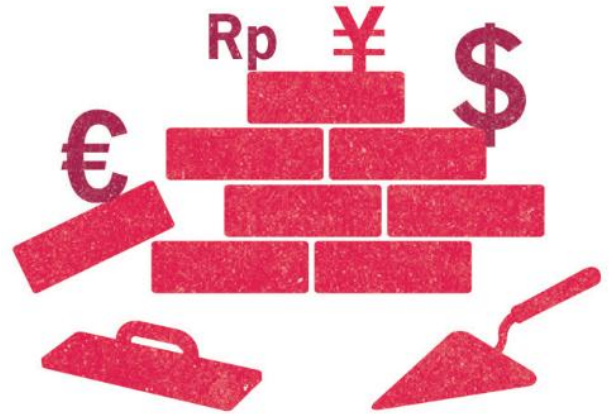
매출금의 회계원칙:

- 1- 매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각종 항목의 합리적가치에 따라 정하게 되고 수금됐는지 미수인지를 구분하지않다.
- 2- 매출금과 그매출을 만든 지출항목들이 적합원칙으로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경우엔 적합원칙과 회계상 신중성 원칙하고 충돌할 수 있으니 회계원이 거래의 본질에 근거해서 합리적, 성실히 반영해준다.
- 3- 자산과 채무를 재평가할때에 발생한 매출, 손익금을 실현된항목으로 볼수없다. 왜냐하면 재평가시점에 기업이 자산에 대한 권한과 채무항목에 대한 채무의무가 있었다. 예, 자산 재평가해서 각 손익항목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 합리적 가치로 재정자산의 재평가를 다 진행됐다고 본다.
- 4- 회계매출과 과세부담 매출을 기록하는 근거시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있다. 과세부담 매출을 법규에 다른 납세금액을 계산하는데만 사용한다. 재정정보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매출금은 회계의 각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꼭 판매 영수증에 반영된 숫자와 꼭 같은것이 아니다.

비용에 대한 회계원칙:

1-비용기록은 지출기한이 아직 안되지만 확실적 발생하는 경우에 하면 신중성으로 자금보존원칙을 보장해준다. 지출과 그로인한 매출금항목은 적합원칙으로 동시에 기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일부경우엔 적합원칙과 회계상 신중성 원칙하고 충돌할수 있으니 회계원이 거래의 본질에 근거해서 합리적, 성실히 반영해준다.

2-법인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되지않은 비용으로 본 각종비용은 충분한 증빙과 회계제도 맞게 결재되면 회계비용의 감소로 기록할수 없지만 법인소득세의 납세금을 증가해주기 위한 세금결재할때에 조정할수가 있기만 한다.



4.10 손해충당금을 만든 필요 자산항목들의 보충

통지 제133호는 손해충당금을 만든 필요 자산항목들을 다음 같이 보충한다:

1-영업증권의 감가에 대한 예비금은 기업이 장부에 기록된 가치에 비해 자기가 영업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증권의 시장가치감가 가능성이 있기를 확실적 증거로 보여 주면서 발생된 손해분에 대한 예비금을 만들수 있다.

예비금의 준비과 환금에 대한 조건, 근거, 기준은 법규이따라 진행한다.

2- 타기업에 투자하는 손해에 대한 예비금:

투자금을 받은 기업이 손해에 당해서 투자주는 자금을 떨어진 가능성이 있는 예비금이고 혹은 투자 각항목의 가치감소를 위한 예비금이다.

- 협력, 연합기업에 투자하는 항목은 투자주의기업이 손해발생해서 현행 규정 처럼 자본금을 잃어버린 경우에 투자측이 예비금을 만든다.

-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항목 (영업증권으로 구분없이)과 컨트롤 권한을가지 않거나 투자주에 대한 큰 영향이 없으면 예비금작성을 다음처럼 진행한다:

- 고시증권에 투자한 항목, 투자항목의 가치를 확실적 확인되면 예비금을 주식의시장 가치에 근거해서 만든다. (영업증권감가의 예비금과 비슷한다)

보고시점에 합리적가치를 정할수없는 투자항목이면투자받은 측의 손해항목에 근거해서 예비금을 만든다./.

Contact

Accounting Alerts are us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Grant Thornton (Vietnam) is not liable for errors in this newsletter, as well as the losses caused by the use of information from this newsletter.

Please contact our audit professional expert if you need to use the information from this newsletter or need the help of Grant Thornton (Vietnam).

Hanoi office

Floor 18, Hoa Binh International Towers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M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chiminh City office

Floor 14, Pearl Plaza Tower
261A Dien Bien Phu, 25 Ward
Binh Tha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M + 84 8 3910 9100
F + 84 8 3910 9101

www.grantthornton.com.vn

Nguy Quoc Tuan
Partner
M +84 8 3910 9180
E Tuan.Nguy@vn.gt.com

Nguyen Hong Ha
Partner
M +84 4 3850 1601
E HongHa.Nguyen@vn.gt.com

Nguyen Dao Thanh Thao
Director
M +84 4 3910 9162
E Thao.Nguyen@vn.gt.com

Daniel De Waal
Director
M +84 4 3910 9131
E Daniel.DeWaal@vn.gt.com

Vo Minh Quang
Senior Manager
M +84 8 3910 9182
E Quang.Vo@vn.gt.com

Nguyen Dich Dung
Senior Manager
M +84 4 3850 1634
E DichDung.Nguyen@vn.gt.com



© 2016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TIL" refers to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each member firm of GTIL is a separate legal entity. GTIL is a non-practicing, international umbrella entity organised as a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corporated in England and Wales. GTIL does not deliver services in its own name or at all.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The name "Grant Thornton", the Grant Thornton logo, including the Mobius symbol/device, and "Instinct for Growth" are trademarks of GTIL. All copyright is owned by GTIL, including the copyright in the Grant Thornton logo; all rights are reserved.